

자양동 92-1 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
자양동 92-1 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 23 조제 9 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(서면)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4월 23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1. 공람 기간 : 2026. 4. 23. ~ 2026. 5. 8.

2.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: 광진구청 주거사업과(☎ 02-450-9713) 자양
4 동 주민센터(☎ 02-450-1832)

3. 공람 내용 : 조합설립인가 관계 서류

4. 조합설립인가 신청 내용

가. 사업명칭: 자양동 92-1 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

나. 위 치: 광진구 자양동 92-1 번지 일대

다. 구역면적: 5,124.㎡

라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: 미정

마. 토지 등 소유자: 69 명

바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1) 조합명: 자양동 92-1 번지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조합

2) 소재지: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 다길 23-12, 1 층

5. 의견제출 : 공람 기간 이내 **서면**으로 의견서 제출

6. 기타사항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(☎02-450-97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